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중소기업체에 일이 있어 방문하던중에 NEP라는 인증제도가 있어 인터넷에서 확인하던중 [신제품인증] 개요에 다음과 같은 문구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이 문구는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실용신안등록을 1999년 12월 08일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신설하고 실제적인 생산이 2006년 09월 03일 이루어 졌다면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과거에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제품화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신뢰성이 적어 매출이 저조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NEP를 신청하고 NEP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귀사가 질의하신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은, (실용화 :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제품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

※ 시제품의 성능테스트, 현장적용을 위한 필드테스트 등은 제품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귀사가 공장을 신설하고 실제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발생한 2006년 9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 이전의 과거에 제품화하여 판매를 한 상태에서 매출(매출이 저조한 경우도 포함)이 발생한 경우는 신청요건에 제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6년 10월 28일부로 신청인은 개발제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Q 현재 멀티탭이나 릴 같은 전기제품의 무접지 판매 및 생산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나 소매에서는 판매가 안되는 무접지 상품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같은 곳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옥션 같은 곳에서는 무접지 멀티탭이나 릴이 판매가능한지요? 또 예를 들어 만약 개인이 무접지 6구 멀티탭 새것을 열 개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필요가 없어서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멀티 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기준 의 형상에 대해서는 K S C 8305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서는 무접지 제품은 동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아울러 동제품등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면 불량제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량 제품에 대한 유통 구조 또한 제조회사 등을 알고 계신다면 저희 협회(579-3291)로 제보를 하여 주시면 불량제품유통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